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215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박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4.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8. 접수 제8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4.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12. 접수 제8964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3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5.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업등록사무소 2021. 5. 27. 접수 제718호로 마친 가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월 3,500,000원, 변제기 2019. 2. 2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경까지 C에게 총 26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2. 18. ‘C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가합10193(본소), 2020가합10209(반소)호].

다. 피고는 2021. 4. 8. C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8. 접수 제864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1. 4. 12. C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8. 접수 제8964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다.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라.항 기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1. 5. 27. C와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광업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다.항, 라.항, 마.항 기재 각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광업채굴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21. 5. 27. 접수 제718호로 가등록(이하 ‘이 사건 가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매매예약 체결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C의 충청북도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63912 판결 등 참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감사였으며, C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였는바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 사건 가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